

1.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中改正令(案) 立法豫告

建設部公告第1994-49號

1. 주요골자

- 가. 현재는 주택사업자의 실적과 사업계획을 매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가 취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가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에서 취합하여 당해 시장·군수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 나. 현재까지 시장·군수등이 사업계획승인신청전에 임의로 운영하던 사전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사전결정의 대상을 100세대이상이거나 10층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결정기간을 30일이내로 명시하여 사업계획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다. 현재는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상업용면적이 50%이상이면 100세대이상인 때에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지역에도 주·상복합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 호수도 100세대이상에서 200세대이상으로 완화하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도록 하여 도시지역내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자 함.
- 라. 공동주택의 건설공사중 주택부분의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예정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마. 현재는 공동주택의 감리제도가 없어 건축법 및 건축사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호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 3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를 받도록 하는등 감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
- 바. 현재는 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국가·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의 사업계획승인 및 신설된 감리, 사전결정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p> <p>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신 설)</p>	<p>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p> <p>①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그 기능에 따라 건설부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p>	<p>제4조의2(노후·불량주택의 범위)</p> <p>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이란 함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지형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p>	<p>제4조의2(노후·불량주택의 범위)</p> <p>-----</p> <p>-----</p> <p>-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p> <p>-----</p> <p>----- . 다만, 제4호의 경우와 지형여건·주변의 환경등으로 보아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의 일부를 포함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행	개정안
<p>1 ~ 3 (생략)</p> <p>4. 건축법 제54조의 재해위험 <u>구역내의 주택으로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주택</u></p> <p>5.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재해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이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u></p> <p>5. (현행과 같음)</p>
<p>제6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p> <p>① ~ ⑦ (생략)</p> <p>⑧ (생략)</p> <p>1. (생략)</p> <p>2. 위원인 공사등의 사장등이 당해 공사등의 <u>임원중에서</u> 추천하여 건설부장관이 위촉 한 자 각 1인</p> <p>3 ~ 4. (생략)</p> <p>⑨ (생략)</p>	<p>제6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p> <p>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임직원중에서</u> ----- -----</p> <p>3 ~ 4. (현행과 같음)</p> <p>⑨ (현행과 같음)</p>
<p>제7조(주택조사)</p> <p>① ~ ③ (생략)</p> <p><u>(신설)</u></p>	<p>제7조(주택조사)</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u></p>

현행	개정안
<p>제10조(등록업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p> <p>① 등록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u>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개인인 등록업자가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등록업자의 사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이 말소된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u> 및 <u>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관할 시장등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에 의한 주택조사를 대한주택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제10조(등록업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p> <p>① - - - - -</p> <p>- - - - - <u>매년 12월말까지 당해연도 사업실적</u> -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 <u>다음연도 사업계획을 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협회(당해 사업자가 소속된 협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로 부터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을 제출받으면 사업실적은 이를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시.군등"이라 한다)별로 종합하고, 사업계획은 지역별 주택공급률과 주택에 대한 수요 및 시.군등별 주택사업자금의 확보여부를 참작하여 이를 조정한 후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을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시.군등"이라 한다)별로 종합하여 관할 시장등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을 지역별 주택공급률과 주택에 대한 수요 및 시.군등 별 주택사업자금의 확보여부를 참작하여 이를 조정한 후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1조(지정업자의 지정기준등)</p> <p>① ~ ② (생략)</p> <p>③ 건설부장관은 3년마다 1회 지정업자를 지정하며,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정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도 지정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④ ~ ⑧ (생략)</p>	<p>제11조(지정업자의 지정기준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건설부장관은 지정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2(지정의 취소)</p> <p>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라 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에 미달하는 때를 말한다.</p> <p>② (생략)</p>	<p>제11조의2(지정의 취소)</p> <p>① - 300호 또는 300세대에 - - -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5의2(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p> <p>① 국민주택채권은 제1종국민주택채권 및 제2종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15의2(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p> <p>① 국민주택채권은 법 제1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과 동조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7조(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p> <p>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중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자와 매입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3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하는 경우 및 국가.</p>	<p>제17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p> <p>①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 - - - - - - - - - - - - - -</p> <p>② - - - - - - - - - - - - - - -</p>

현행	개정안
<p>제20조의2(국민주택기금채권의 발행법등)</p> <p>① 국민주택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p> <p>② 기금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한다.</p> <p>③ 기금채권의 등록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다. 이 경우 증권은 발행하지 아니한다.</p> <p>④ 한국주택은행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등록부를 작성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p>	<p>제20조의2 (삭제)</p>
<p>제21조(기금채권의 이율 및 상환)</p> <p>① 기금채권의 이율.상환방법 및 상환기간은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p>제21조 (삭제)</p>

현행	개정안
<p>② 기금채권은 중도에 상환하지 <u>아니 한다.</u></p>	
<p>제22조(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규정 <u>의 준용)</u> 제15조, 제15조의2제3항, 제15조 의4제1항 및 제3항, 제16조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u>기금채권에 이를 준용한다.</u></p>	<p>제22조 (삭 제)</p>
<p>제31조(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 ① 건설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 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건축연면적의 75퍼센트(법 제44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u>주택조합이나 고용자</u> 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의 범위안에서 건설부장관이</p>	<p>제31조(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 ① - <u>재건축조합이 아닌 주택조합</u> - - - - - - - - - -</p>

현행	개정안
<p>정하는 비율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u>(신설)</u></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31조의3(사전결정의 규모등)</u></p> <p><u>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서</u></p> <p><u>”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u></p> <p><u>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u></p> <p><u>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u></p> <p><u>100세대 이상이거나 10층이상</u></p> <p><u>인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u></p> <p><u>우를 말한다.</u></p> <p><u>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u></p> <p><u>개발된 택지개발지역</u></p> <p><u>2.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u></p> <p><u>지구로 지정되어 아파트지구</u></p> <p><u>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u></p> <p><u>3.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u></p> <p><u>성된 대지조성사업지역</u></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4.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결정된 지역</p> <p>5.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 구역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 되어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 가 수립된 지역</p> <p>6.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지 역</p> <p>제31조의4(사전결정의 절차등)</p> <p>①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한 사전결정신청서 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주택건설사업계획서</p> <p>2.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 설의 배치도</p>

현 행	개 정 안
	<p>3. <u>진입도로등 간선시설의 위치</u> <u>와 규모및 설치계획</u></p> <p>4. <u>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u> <u>결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u> <u>다음 각호와 같다.</u></p> <p>1. <u>주택의 배치 및 층고</u></p> <p>2. <u>주택의 규모및 건설호수</u></p> <p>3. <u>건폐율 및 용적율</u></p> <p>4. <u>진입도로등 간선시설의 위치</u> <u>와 규모</u></p> <p>5. <u>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u></p> <p>③ <u>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u> <u>에 의하여 신청된 주택건설사업</u> <u>의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u> <u>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령이 정</u> <u>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u> <u>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④ 건설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함 에 있어 사전결정 외의 다른 사 전심의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⑤ 법 제32조의4제4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건설사업대지의 확장 또는 축소로 인하여 건축물 의 층고나 건설세대수가 변 경되는 경우 2.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아 니한 경우 3.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결정의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안
<p>제32조(사업계획의 승인대상등)</p> <p>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도시계획구역중 <u>상업지역</u>안에서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20세대, 그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u>100세대</u>)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제곱미터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p> <p>②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p>	<p>제32조(사업계획의 승인대상등)</p> <p>① - - - - - - - - - - - - - - - - - - - - - - - - - <u>상업지역 또는</u> <u>준주거지역</u>안에서 - - - - - - - - - - <u>경우로서 주택의 규모가 건설부</u> <u>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u> - - - - - - - - - - - - - - - - - <u>-200세대)</u> - - - - - - - - - - - - - - - - - - - - - - - - -</p> <p>② - - - - - - - - - - - - - - -</p>

현행	개정안
<p>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7 (생략)</p> <p>8. 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u>철거계획서</u></p> <p>③ ~ ⑦ (생략)</p>	<p>-----</p> <p>-----</p> <p>-----</p> <p>-----</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8. -----</p> <p>-----</p> <p>-- <u>철거계획서 및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서(이 경우 처분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계획"으로 본다)</u></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34조(사용검사등)</p> <p>① 법 제33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에 관한 <u>사용검사를</u>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u>(신설)</u></p>	<p>제34조(사용검사등)</p> <p>① ----- ----- <u>사용검사를</u>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u>제34조의3(임시사용 승인등)</u></p> <p>① <u>법 제33조의2제5항 단서의</u> <u>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u> <u>경우라 함은 건축물의 단위별로</u> <u>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u></p> <p>② <u>임시사용 승인을 얻고자 하</u> <u>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u> <u>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임시</u> <u>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u></p> <p>③ <u>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u> <u>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u> <u>는 완성된 건축물이 사업계획승</u></p>

현행	개정안
<p>제34조의3(공동사업주체의 사업 시행)</p> <p>법 제33조의4 및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인내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사용의 승인대상이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p> <p>④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 건설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임시사용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p> <p>제34조의4(공동사업주체의 사업 시행)</p> <p>(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1 ~ 3. (생략)</p> <p>(신설)</p> <hr/> <p>(신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u> <u>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u> <u>재건축 결의된 조합은 재건축</u> <u>하고자 하는 대지의 소유권을</u> <u>80퍼센트이상 확보한 경우에</u> <u>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u> <u>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u> <u>있다.</u></p> <p>5. <u>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u> <u>계획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u> <u>은 사업착수시까지 재건축에</u> <u>동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u> <u>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u> <u>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u> <u>따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34조의5(주택의 설계 및 시공)</p> <p>① 법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적성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계도면의 작성기준 2. 시방서의 작성기준 3. 구조계산서의 작성기준 4.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등 <p>기타 필요한 사항</p> <p>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세부시행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34조의6(감리자의 자격등)</p> <p>① 법 제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1. 300세대미만의 주택건설사업 : 건축사법에 의하여 감리 자격이 있는자</p> <p>2. 30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 감리전문회사</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 자를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지 역에 2이상의 주택건설단지가 있는 때에는 공동으로 감리하도 록 지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 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감리의 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를 공사현장 에 상주시켜 감리하되, 이 법에 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건축 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를 하여</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는 착공신고.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시험 및 자재확인. 사용검사등의 경우에 확인. 날인을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p> <p>제34조의7(감리자의 업무)</p> <p>법 제33조의6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등에 적합한지의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3.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34조의8(이의신청의 처리등)</p> <p>①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법 제33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시정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업주체,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등을 참고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34조의9(감리자의 교체등)</p> <p>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33조의6 제1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1.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2회이상 묵인한 때</p> <p>2. 감리자가 2회이상 정당한 사 유없이 공사를 중단 시킨 때</p> <p>3. 감리자가 시정통지한 위반 사항이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3회이상 이유없다고 판정된 때</p> <p>4. 감리자가 공사기간중 공사 현장에 1월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때</p> <p>5. 기타 감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p> <p>②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주체, 시공자 및 당해 감리자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34조의4(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 ~ ② (생략)</p> <p>제42조(주택조합의 설립등) ① (생략) ② 주택조합은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서신설)</p>	<p>③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교체한 때에는 즉시 다른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④ 감리자의 교체에 따른 감리비의 정산은 건축공정에 따른 비율에 의한다.</p> <p>제34조의10(토지매수업무등의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제42조(주택조합의 설립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0세대미만의 노후. 불량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행	개정안
<p>③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구성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지역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 다 (생략)</p> <p>라.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지역과 <u>동일한</u>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내에 1년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p> <p>2 ~ 3 (생략)</p> <p>④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p> <p>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조합의</p>	<p>③ -----</p> <p>-----</p> <p>-----</p> <p>1. -----</p> <p>-----</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p> <p>-----</p> <p>----- <u>동일 또는</u></p> <p><u>인접한</u> -----</p> <p>-----</p> <p>-----</p> <p>2 ~ 3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p> <p>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p>

현행	개정안
<p>구성원 수가 20인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생략)</p> <p>(신설)</p> <p>4. (생략)</p> <p>⑤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 ⑦ (생략)</p> <p>⑧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주택이 제4조</p>	<p>내에서 신규가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조합원이 전산조회 등으로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⑤ -----</p> <p>-----</p> <p>-----</p> <p>-----</p> <p>-----</p> <p>-----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지역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추가가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 ⑦ (현행과 같음)</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기존주택의 노후·불량의 정도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p> <p>⑨ - ⑩ (생략)</p> <p>제43조의2(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립등)</p> <p>① - ② (생략)</p> <p>③ 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지회·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 한다.</p> <p>1. (생략)</p> <p>2. 새로설치된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u>제1항</u> 각호의 사항을</p> <p>3. (생략)</p>	<p>⑨ - ⑩ (현행과 같음)</p> <p>제43조의2(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립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p> <p>- - - <u>제2항</u> - - - - -</p> <p>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④ 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등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p> <p>1.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구소재지와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u>제1항</u> 각호의 사항</p> <p>2. 지점등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그 지점등의 구소재지 및 다른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등의 신소재지에서는 <u>제1항</u> 각호의 사항</p> <p>3. (생략)</p>	<p>④ - - - - -</p> <p>- - - - -</p> <p>- - - - -</p> <p>- - -</p> <p>1. -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u>제2항</u> - - - - -</p> <p>2. -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u>제2항</u> - - - - -</p> <p>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⑤ 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p> <p>⑥ (생략)</p> <p>제43조의5(보증의 종류와 수수료)</p> <p>① 법 제47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하자보수보증은 주택의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주택하자의 보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 의무하자보수보증과 장기하자보수보증으로 구분한다.</p> <p>2 ~ 5. (생략)</p> <p>② ~ ③ (생략)</p>	<p>⑤ 제2항 -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⑥ (현행과 같음)</p> <p>제43조의5(보증의 종류와 수수료)</p> <p>① - - - - -</p> <p>- - - - -</p> <p>- - - - -</p> <p>- - - - -</p> <p>1. - - - - -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하자의 - - - - -</p> <p>- - - - -</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 43조의16(운영위원회의 구성)</p> <p>① ~ ③ (생략)</p> <p>④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제 43조의16(운영위원회의 구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부위원장 2인을 두되,</u> ----- ----- -----</p>
<p>제 43조의21(공제조합의시공지도등)</p> <p>① ~ ③ (생략)</p> <p><u>(신설)</u></p>	<p>제 43조의21(공제조합의시공지도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조사등을 위하여 <u>공사감리자로 부터 시공방법, 공정 및 사용자재등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u></p>
<p>제 45조(권한의 위임)</p> <p>건설부장관은 법 제 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1. (생략)</p>	<p>제 45조(권한의 위임)</p> <p>----- ----- -----</p> <p>1.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2. <u>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u>		2. (<u>삭 제</u>)		
<u>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u>				
<u>조례의 승인에 관한 권한</u>				
3 ~ 4의2. (생 략)		3 ~ 4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4의3. <u>법제32조의4의 규정에</u>		
		<u>의한 사전결정에 관한 권한</u>		
5. <u>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u>		5. -----		
<u>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u>		-----		
<u>한. 다만, 국가. 대한주택공</u>		- - <u>다만, 수도권지역</u> - - -		
<u>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u>		-----		
<u>작성하는 사업계획과 수도권</u>		-----		
<u>지역 또는 직할시지역의 주</u>		-----		
<u>택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부</u>		-----		
<u>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u>		-----		
<u>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는</u>		-----		
<u>그러하지 아니한다.</u>		-----		
6. <u>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u>		6. <u>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u>		
<u>의한 대지조성사업의 사용검</u>		<u>한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의</u>		
<u>사에 관한 권한</u>		<u>승인에 관한 권한</u>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7 ~ 9. (생략)</p>	<p><u>6의2. 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u> <u>한 감리자의 지정등에 관한</u> <u>권한</u></p> <p>7 ~ 9.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별표 1]</p> <p>등록업자의등록말소및영업정지 처분에관한기준</p> <p>1. (생략)</p> <p>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가 ~ 아. (생략)</p> <p><u>(신설)</u></p>	<p>[별표 1]</p> <p>등록업자의등록말소및영업정지 처분에관한기준</p> <p>1. (현행과 같음)</p> <p>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가 ~ 아. (현행과 같음)</p> <p><u>아의2. 법 제33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한 때</u></p> <p>(1) <u>내력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안전진단결과 붕괴우려가 있을 때 : 등록말소</u></p> <p>(2) <u>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 : 영업정지 6월</u></p> <p>(3) <u>기타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 : 영업정지 3월</u></p>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아의3. 법 제33조의6의 규정에</u> <u>의한 감리자의 시정통지에</u> <u>따르지 아니하고 당해공사</u> <u>를 계속한 때:영업정지 3월</u>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업자의 지정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1. 지정기준

구 분	지 정 기 준
자 본 금	50억원 이상
기 술 능 력	1. 건축분야기술자 : 4인이상. 다만, 기사1급이상의 기술자가 1인 이상이어야 한다. 2. 토목분야기술자 : 2인이상. 다만, 기사1급이상의 기술자가 1인 이상이어야 한다. 3. 전기분야기술자 : 1인이상 4. 기계분야기술자 : 1인이상 5. 안전관리분야기술자 : 1인이상 6. 건축사 : 1인이상
주택건설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연평균 300세대이상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3년이 경과된 경우로서 건설업법상 토목건축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나. 자본금은 지정신청의 접수마감일 현재 납입된 자본금을 말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을 때에는 실질자본금을 말한다

다. 주택건설실적은 지정신청의 접수마감일 현재의 실적으로서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었거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라. "주택건설공사도급실적"에는 하도급에 의한 공사실적은 제외한다.

마. 주택건설실적과 주택건설공사 도급실적은 합산할 수 없다.

바. 기술능력은 지정신청을 한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면허대장에 등재된 기술자를, 전기분야.기계분야 및 안전관리분야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전기분야기술자격취득자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2급 이상에 한한다)를,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얻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업 면허기준에 의하여 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보유부분에 한하여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2.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중에서 당해 신청자의 경영상태.신용도.기술개발.품질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그중 우수한 자를 지정업자로 지정한다.

현행	개정안
<p>[별표 3]</p> <p>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p> <p>1.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 제한다.</p> <p>가 ~ 나 (생략)</p> <p>다. <u>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또는 정부투자기 관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체에 한한다)</u></p> <p>라 ~ 마 (생략)</p> <p>2. (생략)</p> <p>3.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p> <p>가. (생략)</p> <p>나. 다음에 정하는 자가 건축물 의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p>	<p>[별표 3]</p> <p>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p> <p>1.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 제한다.</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 - - - - <u>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u> - - - - - - - - - - - - - - -</p> <p>라 ~ 마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 - - - - - - -</p>

현행	개정안
<p>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 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p> <p>(1) 불교재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불교단체, 민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 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 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 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 를 하는 때</p> <p>(2) (생략)</p> <p>다.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건설 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 하여 매입대상항목의 일부를 지정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 다.</p> <p>(1) - (2) (생략)</p>	<p>-----</p> <p>-----</p> <p>(1)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허 가를 받은 종교단체 및 이에 소속된 종교단체, 그리고 관 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 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 - -</p> <p>-----</p> <p>-----</p> <p>-----</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다. -----</p> <p>-----</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고보조 또는 지방비의 보조를 받은 법인과 <u>의료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자의 의료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의료보호시설을 경영하는 법인</u></p> <p>(4) ~ (8) (생략)</p> <p>라 ~ 바 (생략)</p> <p><u>(신설)</u></p>	<p>(3) -----</p> <p>-----</p> <p>-----</p> <p>----- <u>의료보호법 제10조</u> -----</p> <p>-----</p> <p>-----</p> <p>-----</p> <p>(4) ~ (8) (현행과 같음)</p> <p>라 ~ 바 (현행과 같음)</p> <p>사. <u>법 제47조의6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법 제47조의7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건축허가 및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u></p>

현행	개정안
<p>4.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u>5천원</u>으로 한다. 다만, <u>5천원</u>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u>2천5백원</u>이상 <u>5천원</u>미만인 때에는 이를 <u>5천원</u>으로 하고, 그 단수가 <u>2천5백원</u>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p>	<p>4. - - - - - - - <u>1만원</u> - - - - - <u>1만원</u> 원 - - - - - - - - - <u>5천원</u> - - - - -<u>1만원</u> - - - - - <u>-1만원</u> - - - - - - - <u>-5천원</u> - - - - - - -</p>
<p>5. (생략)</p>	<p>5.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부 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표 (단위 : 원)		[부 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표 (단위 : 원)	
매 입 대 상	매입금액	매 입 대 상	매입금액
1 ~ 7 (생 략)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같음)
8. 건축허가(대수선허가 를 제외하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 가를 받은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거전용 건축물은 연 면적이 85㎡(주거전용 면적을 말하되, <u>공동</u>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을 말 한다) 를 초과하는 때 와 <u>주거전용 이외의</u> <u>건축물은 연면적이</u>	(생략)	8. - , <u>공동</u> <u>주택(여러 가구가 한</u> <u>건물에 거주하되 각각</u> <u>의 가구가 독립하여</u> <u>거주할 수 있도록 구</u> <u>획되어 건축된 주택을</u>	

현		행		개		정		안	
매 입 대 상		매입금액		매 입 대 상		매입금액			
165㎡(공장용 건축물				포함한다) - - - - -					
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주거전용 이외의 건축					
500㎡)이상인 때에 한				물(공동주택의 공용면					
하며, 증축의 경우에				적에 포함되는 부대.					
는 증축후의 연면적을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기준으로 하되, 증축				- - - - -					
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 - - - -					
그 금액을 뺀 금액 (- - - - -					
73. 2. 26이전에 건축허				- - - - -					
가된 건축물과 73. 2.				- - - - -					
27이후 75. 12. 4이전에				- - - - -					
건축허가된 주거전용				- - - - -					
건축물로서 증축후의				- - - - -					
연면적이 165㎡미만인				- - - - -					
주거전용 건축물에 있				- - - - -					
어서는 증축후의 연면				- - - - -					
적에 해당하는 난을				- - - - -					
기준으로 하되 증가면				- - - - -					

현		개 정 안	
매 입 대 상	매입금액	매 입 대 상	매입금액
<p>적에 한하여 산정한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p> <p>또한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용도변경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p> <p>가. (생 략)</p> <p>나. 주거전용 이외의 건축물(공업단지 및 <u>공업배치법상 유치 지역안 또는 읍.면 지역에서 신.증축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건설부장관이 재무</u></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주거전용 이외의 건축물(공업단지와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u></p>	

현행		개정안	
매입대상	매입금액	매입대상	매입금액
<p>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교육용, 종교용, 자선용 기타 공익용과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p> <p>(1) 극장. 영화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흥기장 및 사치성욕장용 건축물</p> <p>(2) ~ (3) (생략)</p> <p>다 ~ 라 (생략)</p> <p>9. (생략)</p> <p>10. 해외건설업면허</p> <p>11 ~ 12 (생략)</p>	<p>(생략)</p> <p>(생략)</p> <p>(생략)</p> <p>(생략)</p>	<p>(1) - - - - -</p> <p>- - - - -</p> <p>유흥주점 및 단란주점</p> <p>- - - - - 특수목욕장용 - - - - -</p> <p>(2)~(4)(현행과같음)</p> <p>다 ~ 라 (현행과같음)</p> <p>9. (현행과 같음)</p> <p>10. 해외건설업등록</p> <p>11 ~ 20 (현행과 같음)</p>	<p>(같음)</p> <p>(같음)</p> <p>(같음)</p> <p>(같음)</p>

현행		개정안	
매입대상	매입금액	매입대상	매입금액
13. <u>중기신규등록</u>	(생략)	13. <u>건설기계의 신규</u>	(같음)
14. <u>중기사업 신규허가</u>	(생략)	<u>등록</u>	(삭제)
가. <u>대여업</u>		(삭제)	
(1) <u>종합중기대여업</u>			
(2) <u>단종중기대여업</u>			
나. <u>정비업</u>			
(1) <u>종합중기정비업</u>			
(2) <u>부분중기정비업</u>			
15 ~ 17. (생략)	(생략)	15 ~ 17. (현행과같음)	(같음)
18. <u>식품영업허가</u>	(생략)	18. <u>식품영업허가</u>	(같음)
가 ~ 나. (생략)		가 ~ 나. (생략)	
다. <u>일반음식점 영업</u>		다. <u>일반음식점 영업</u>	
		(연면적 33제곱미터	
		<u>이상에 한한다)</u>	
라. <u>휴게음식점 영업</u>		라. <u>휴게음식점 영업</u>	
		(연면적 33제곱미터	
		<u>이상에 한한다)</u>	

현행		개정안	
매입대상	매입금액	매입대상	매입금액
19 ~ 20. (생략)	(생략)	19 ~ 20. (현행과같음)	(같음)
21. <u>목욕탕업 허가</u>	(생략)	21. <u>목욕장업 허가</u>	(같음)
가. <u>독탕(터키탕 및 증기탕을 포함한다)</u>		가. <u>특수목욕장업</u>	
(1) ~ (3) (생략)		(1)~(3)(현행과같음)	
나. <u>공중탕(사우나포함분에 한한다)</u>		나. <u>일반목욕장업(가족탕업 및 한증막업에 한한다)</u>	
(1) ~ (3) (생략)		(1)~(3)(현행과같음)	
22. (생략)	(생략)	22. (현행과 같음)	(같음)
23. 부동산등기	(생략)	23. 부동산등기	(같음)
가. <u>소유권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와 동일소유 명의로 분필 또는 합</u>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		개정안	
매입대상	매입금액	매입대상	매입금액
<p><u>필의 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1) ~ (2) (생략) 나 ~ 다 (생략) 24 ~ 26 (생략) 27. <u>해외건설공사 도급 허가(계약체결된 자에 한한다)</u></p> <p>28 ~ 30 (생략) 31. <u>주택관리업면허</u> 32 ~ 33 (생략)</p>	<p>(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p>	<p>-----</p> <p><u>경우를 제외하며 신탁등기는 포함한다)</u></p> <p>(1)~(2)(현행과 같음) 나~다 (현행과 같음) 24 ~ 26 (현행과 같음) 27. <u>해외건설공사 수행 계획신고(계약이 체결된 자에 한하며, 설계변경등으로 증액된 경우를 포함한다)</u></p> <p>28 ~ 30 (현행과 같음) 31. <u>주택관리업등록</u> 32 ~ 33 (현행과 같음)</p>	<p>(같음) (같음) (같음) (같음) (같음) (같음) (같음)</p>

(부 칙)

- ① 이 영은 '94. 3. 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지정업자는 94.12.31까지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은 95.1.1 이후부터 적용한다.
- ③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입지심의를 얻었거나 입지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제34의5 및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